

광주지방법원 2023. 3. 14 선고 2022가단12782 판결 [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3. 2. 28.

판 결 선 고 2023. 3. 14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07. 4. 16. 접수 제6772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판단

원고는 피고(원고의 친누나)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)을 1,95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(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)을 체결하고, 2007. 4. 16.

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. 3. 20.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해 인정된다.

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,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자신의 매매대금지급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할 것이고,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는 적법하다.

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(피고는,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줄 필요가 없는 상황이어서 주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나, 위 주장은 정당한 항변 사유가 될 수 없다).

2. 결론

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소연

별지